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55호)

2024.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보험료산정 세부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3

I. 개요

1.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5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한정애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6. 27.
- (3) 회 부 일 : 2024. 6. 2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 보험료와 이자소득·배당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월액보험료를, 지역가입자는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을 월별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기준·방법 등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시행령은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관으로 재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건강보험료는 국민의 경제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회 보험료로 국민적 관심이 높고, 구체적인 산정 기준·방식에 따라 부과 되는 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세부 산정방식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관으로 위임하기보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정하고 국민에게 알

릴 필요가 있음.

따라서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기준·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산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71조 및 제72조).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보험료산정 세부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가. 개정안의 내용

□ 현행은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기준·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소득월액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 자료,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 및 재산 자료 등 그 밖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72조).

현행	개정안
제71조(소득월액) ① ~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의 구체적인 범위,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u>정한다.</u>	제71조(소득월액)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정하고, 소득월액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 자료 등 그 밖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제72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 ① ~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u>정한다.</u>	제72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u>정하고,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에 반영하는</u>

	<u>소득 및 재산 자료 등 그 밖의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69조¹⁾는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징수 관련 근거를 규정하면서 ①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 및 보수 외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보수월액보험료 및 보수의 소득월액보험료를 월별 보험료액으로 하고, ②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근거로 계산한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여 월별 보험료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71조제3항 및 제72조제4항에서는 위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²⁾ 및 보험료부과점수³⁾ 관련 구

- 1)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③ (생략)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보수 외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
 1. 소득: 제71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재산: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
- 2)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소득월액)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 외 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text{연간 보수 외 소득} - \text{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times 1/12$$

- ②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은 지역가입자의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의 구체적인 범위,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체적인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일부 규정한 후⁴⁾ 소득 자료 및 재산 자료의 종류 등 세부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재위임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41조제6항 및 제42조제4항)⁵⁾,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정관에서는 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재산 자료의 대상 및 범위, 소득월액의 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음⁶⁾.

3)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대출

2. 「주택도시보증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

② 제1항에 따라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을 정할 때 법령에 따라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별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중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관련 규정 참조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 자료의 구체적인 종류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2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 자료의 구체적인 종류 등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6)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43조의2(소득월액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 자료 등) ① 영 제41조제3항 본문에 따라 소득월액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연금소득: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자가 공단에 제공하는 해당 급여 관련 자료

2. 영 제41조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소득: 국세청장이 매년 공단에 제공하는 소득(경정소득을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소득 자료의 제공 지연 등 이사장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소득 자료의 반영기간은 영 제41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0조에 따른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소득 자료를 소득월액 산정에 반영한 후 해당 소득의 경정이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경정 전 자료가 반영된 소득월액을 경정된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다.

제43조의3(소득월액의 조정 등) ① 영 제41조의2제1항에서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사유”란 소득월액 산정에 반영된 다음 각 호의 소득과 관련하여 그 호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단이 인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 2000년 7월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되기 전의 건강보험은 공무원 및 교원 건강보험공단, 227개의 지역의료보험조합과 142개 직장조합 등 다수 보험자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보험료와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을 각 조합의 정관에서 규정했었는데, 건강보험 통합 이후에도 기존의 규정 방식을 계속 유지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소득·재산 자료의 구체적 범위 등 세부사항을 정관으로 위

-
1. 영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 휴업, 폐업
 2. 영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근로관계의 종료
 - ② 영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소득월액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서류를 방문,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 등의 방법으로 공단에 제출해야한다. 다만, 이미 제출하여 추가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로서 이사장이 정하는 사유가있는 경우 제2호의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1. 이사장이 정하는 소득월액 조정 신청서
 2. 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 조정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이사장이 정하는서류
 3. 소득월액 조정 이후 공단이 영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소득월액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서류로서 이사장이 정하는 서류
 4. 그 밖에 소득월액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서류
 - ③ 영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소득월액의 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그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이 제5항에 따라 정산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공단은 영 제41조의2제1항의 신청에 따라 조정한 소득월액은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달이 속하는 해의 12월까지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반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호의 달부터 반영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
 - 가. 매월 1일에 신청하거나 매월 1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달에 그 공휴일(공휴일이 연속된 경우에는 그 연속된 공휴일의 마지막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에 신청한 경우
 - 나. 영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전년도 소득 자료를 반영하여 소득월액을 부과하는 달에 영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면서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반영할 것을 신청한 경우
 2. 자격의 소급 취득·변동 처리에 따라 부담하는 소득월액보험료에 대한 소득월액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그 자격 취득·변동 처리에 따라 소득월액보험료를 부담했어야 하는 최초의 달
 - ⑤ 영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정산은 제4항에 따른 기간이 속하는 연도(이하 이 항에서 “해당연도”라 한다)의 다음 연도에 제43조의2에 따른 자료로 확인되는 해당연도 소득(영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소득에 한정하며, 해당 소득에 대한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정 소득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그 해당연도에 속하는 달의소득월액을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득월액 조정 기준, 정산 방법 등 소득월액보험료의 조정·정산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 제43조의4(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 자료 등) ①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 자료의 종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보험료부과점수의 조정 신청 사유, 그 신청 및 신청취소의 방법, 조정 보험료부과점수의반영기간, 조정 이후의 보험료 정산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을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월액”은 “보험료부과점수”로, “소득월액보험료”는 “보험료”로 본다.
- ②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하는 재산에 관한 자료로서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는 그 호의 달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공하는 영 제42조제3항제1호의 재산에 관한 자료(해당연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재산세 과세자료를 말한다): 해당 연도 11월부터다음 연도 10월까지
 2. 영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보증금 및 월세금액에 관한 자료로서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자료: 그 목에 해당하는 달
 -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달 제공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확정일자부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해당 월
 - 나. 가입자가 제출하거나 공단이 조사 또는 확인한 자료: 이사장이 정하는 달
 3. 영 제42조제3항제3호의 자동차에 관한 자료(국토교통부장관이 매달 제공하는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정보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해당 월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재위임한 소득자료 및 재산자료의 종류 등 세부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으로,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가입이 강제되며 보험료는 사실상 준조세와 같은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료 산정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산정과정의 투명성·신뢰도를 높이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의 문구와 같이 규정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사항과 고시로 위임할 사항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가 그 보험료 산정기준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나, 건강보험공단 정관은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공개되고 있고, 구체적인 보험료 산정 방법도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 개정의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음.

문 의 처
02)6788-5503

[별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중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 기준 관련 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① 소득월액(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을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

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②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소득 자료의 반영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영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월액보험료(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에 대한 월별 보험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자료. 다만, 제1항제5호의 연금소득 자료는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로 한다.

2. 매년 11월 및 12월의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

④ 법 제71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같은 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연간 2천만원을 말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 자료의 구체적인 종류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2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이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종중재산(宗中財産), 마을 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한다.

2.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